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혜연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6.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전혜연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남양주시 청소년이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 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시설 펀그라운드 객실 이용료 감면(별표 제2호)

- 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의 경우 : 100분의 30 → 100분의 40

◯ 청소년시설 펀그라운드 객실 이용료 감면 신설(별표 제2호)

- 다자녀가정 중 1명 이상 청소년 자녀을 동반한 경우 : 100분의 40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청년정책과

라. 입법예고 : 2024. 5. 31. ~ 2024. 6. 6. (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유스호스텔인 정약용펀그라운드의 객실 사용료에 대한 감면비율을 일부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율 40%를 신설하는 등 주소지를 둔 시민과 동일하게 감면율 30%인 시 단체에 대한 우대 폭을 높이고,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을 통하여 저출산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 및 특징 〉

시설종류	시설 개념(기능 및 특성)
청소년 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일상생활권 등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시설은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1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집회장,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2개소 이상의 자치활동실, 2개 이상의 특성화 수련활동장, 1개소 이상의 상담실, 1개소 이상 휴게실, 1개소 이상 지도자실이 필수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해야 함(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청소년 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입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구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시설기준으로 10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식당, 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수련의 숲, 강의실, 특성화 수련활동장, 지도자실, 휴게실, 비상설비, 기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 기본적인 기능은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숙박을 하며 단체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것
청소년 문화의 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시설로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함(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청소년 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유스 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2014.7.22시행) - 입지조건은 명승지, 역사유적지 부근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청소년 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일상생활권 등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사례로는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등

붙임1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붙임2 **비용 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2조(이용료등), 별표 2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정약용펀그라운드 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 객실 이용료 감면액 및 남양주시 거주 다자녀가정 중 1명 이상 청소년 자녀 동반한 경우 감면액의 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정약용펀그라운드 객실 수입 감면유형별 개정 전후 비용추계(23년 기준)>

(단위:천원)

구분	이용건수	개정 전(A)	개정 후(B)	(A-B)
계	206	14,367	11,266	3,101
① 20인이상 남양주시 소재의 단체의 경우	109	7,340	5,243	2,097
②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다자녀가정 중 1명이상 청소년 자녀 동반한 경우	97	7,027	6,023	1,004

※ 23년 객실 수입액 : 133,332천원 / 23년 이용 총 객실 수 : 2,378실

①은 23년 20인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 감면 객실 수 : 109실

②는 23년 남양주시에 주소 두고 있는 경우 642건 중

우리 시 다자녀 세대 비율 15%(24.3.기준)로 계산한 객실 수 : 97실

②는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40% 감면조항은 신규 조항이나,
개정 전에도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30% 감면되고 있었던 사항임

4. 작성자

청년정책과 과장 박미경